



2014년도 반부패 청렴 업무 실무자 해외 반부패 교육훈련 결과 보고서

2014. 10.



통 계 청
STATISTICS KOREA

목 차

I. 교육훈련 개요

1. 목적 및 교육기관 소개 1
2. 교육훈련 세부일정 4
3. 참가자 명단 5

II. 교육훈련 내용

1.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8
2. 오늘날 환경에서의 부패 검토(나이지리아의 경험) .. 13
3. Fraud Prevention - Tools and Concepts 17
4. 국제음부즈만협회(IOI)의 노력 21
5. UN 마약범죄국(UNODC)의 노력 25
6. 오스트리아경제범죄및부패전담검찰청(WKStA)의 노력 29
7. Organizational Integrity 32

III. 국제 반부패 정책 적용 방안

- 1~7. 국제 반부패 정책 적용 방안 사례 38~51
8. 교육후기 54

I. 교육훈련 개요

1 목적 및 교육기관 소개

□ 과제명 : ‘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우수기관 및 청렴업무 담당자 교육훈련

□ 목적

- 국제반부패기구 교육 실시를 통해 각급기관 실무자의 반부패·청렴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도모
- 반부패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실질적 부패방지 및 척결방안 습득을 통한 공공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 촉진

□ 교육기간 : ‘14. 8. 27. ~ 9. 4.(7박 9일)

□ 주관 교육기관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 위 치 :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Laxenburg)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

- UN부패방지협약 등 일련의 국제 반부패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 반부패 분야의 연구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선도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다자간 공동 이니셔티브로 발족
 - ※ '11. 3. 8. 기관설립 협정 발효, 국제기구 지위 획득
 - ※ 가입서명('10. 12. 29.), 비준서 기탁('11. 12. 15.), 협정 국내 발효('12. 2. 13.), 협력 MOU 체결(권익위, '12. 3. 27.), '13년 기여금 납부
- 주요 업무
 - 부패방지 관련 세미나·사례연구에 기초한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 부패방지 관련 교육 및 훈련
 - 각 국가별 특수성에 기초한 조사·수사기법에 대한 교육
 -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민간의 협력 촉진 등
- '14. 1. 14. 기준 54개 당사국을 포함, 70개국의 회원이 참여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소개

○ 기관 개요

- 성격 : 국제기구

※ '11. 3. 8. 기관설립 협정 발효, 국제기구 지위 획득

※ 가입서명('10. 12. 29.), 비준서 기탁('11. 12. 15.), 협정 국내 발효('12. 2. 13.), 협력 MOU 체결(권익위, '12. 3. 27.), '13년 기여금 납부

- 개관 : 2010년 10월

- 위치 :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Laxenburg)

○ 설립배경

- UN부패방지협약 등 일련의 국제 반부패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지원할 국제기구가 필요

※ UN총회(64/237, '09.12.24.), ECOSOC총회(2009/22, '09.7.30.), UN부패방지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3/2, 3/4, '09.12.1.) 의결 등에서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설립을 환영하고 주목하는 내용 포함

- 반부패 분야의 연구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선도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다자 간 공동 이니셔티브*로 발족

* UN 마약범죄국(UNODC), EU부패방지총국(OLAF), 오스트리아 정부

○ 설립목적

- 반부패 교육 및 전문적인 훈련제공

- 부패의 모든 양상에 대한 연구 수행 및 촉진

- 부패 척결을 위한 그 밖의 다른 적절한 형태의 기술지원 제공

- 부패 척결을 위한 국제 협력 및 네트워크 형성

○ 조직 구성

- 당사자 총회, 집행이사회, 국제수석자문위원회, 국제학술자문위원회, 학장

○ 주요 업무

- 세미나와 사례연구에 기초한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 부패방지와 관련한 개인 대 개인(peer-to-peer) 간 교육 및 훈련
- 각 국가별 특수성에 기초한 조사.수사기법에 대한 교육
-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민간의 협력 촉진
- 각 분야의 반부패 전문가 간 네트워크 형성

○ 재원 조달

- 초기 설립비용은 오스트리아 정부 측에서 부담하고, 활동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국, 민간기구 등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충당

○ 국가별 참여 현황

- '14. 1. 14. 기준 54개 당사국을 포함, 70개국의 회원이 참여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베냉,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 파소, 카보 베르데, 칠레,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콩고 민주공화국, 이집트, 그리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케냐, 라트비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멕시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필리핀, 포르투갈, 한국,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시리아, 태국, 마케도니아, 토고, 터키, 우간다, 영국, 예멘, 잠비아, European Public Law Organization, International Center for Migration Policy Develop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진하게 표시한 국가는 당사국(Party)

2 교육훈련 세부일정

일자	교육 내용	비고
8.27.(수)	▶ 출국(인천→비엔나)	
8.28.(목)	▶ <Session 1> ① International Efforts to Curb Corruption ② Overview of Corruption in Today's Environment	IACA
8.29.(금)	▶ <Session 2> ① Fraud Prevention (I) Tools and Concepts ② Fraud Prevention (II) Tools and Concepts ③ Excursion to the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	IACA IOI
8.30.(토)	▶ 국제기구 반부패 정책의 개별기관 적용 방안 강구	
8.31.(일)	▶ 자료수집 정리 및 교육 준비	
9.1.(월)	▶ <Session 3> : Excursion to UNODC/Vienna International Center (VIC)	UNODC
9.2.(화)	▶ <Session 4> : Excursion to Public Prosecutors' Office for White-Collar Crime and Corruption (WKStA)	WKStA
9.3.(수)	▶ <Session 5> ① Organisational Integrity (I) ② Organisational Integrity (II)	IACA
9.4.(목)	▶ 귀국(비엔나→인천)	

3 참가자 명단

번호	소속	부서명	직급(직위)	성명
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부이사관	이상범
2	국민권익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	행정사무관	최유진
3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	행정사무관	김동현
4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	주무관	손상수
5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주무관	변환기
6	문화재청	감사담당관실	주무관	김영미
7	조달청	감사담당관실	주무관	안효선
8	병무청	감사담당관실	주무관	박영선
9	통계청	감사담당관실	사무관	한영일
10	강원도	감사담당관실	주무관	김진호
11	부산광역시	감사담당관실	주무관	김경민
12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주무관	정효희
13	경북교육청	감사관실	서기관	정재원
14	한국철도공사	감사실	차장	박종성
15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실	과장	장형천
16	한국남동발전	감사실	차장	한성원
17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영성과처	차장	박상현
18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실	차장	박찬일
19	한국환경공단	감사실	팀장	전용종
20	한국마사회	감사실	팀장	육근혜
21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실	과장	장종인
22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재경영부	팀장	권오훈
23	우체국금융개발원	감사실	과장	문용태
2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감사실	수석	김대권
2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감사실	책임급	이현호
26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감사실	차장	이흥식

4 방문국가 소개

【 일반 현황 】

- ▶ 수도 : 빈(Wien) ▶ 인구 : 약 830만명 ▶ 면적 : 68,855km²
- ▶ 도시 : 빈, 인스브루크, 잘츠부르크 ▶ 주요민족 : 게르만족
- ▶ 주요언어 : 독일어(영어도 많이 사용) ▶ 종교 : 카톨릭(90%), 개신교(6%)

◆ 개요

국명이 '동쪽의 나라'라는 뜻의 '외스터라이히'에서 비롯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1278년 합스부르크 왕가의 속령이 되었으며 이후 합스부르크 왕가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를 겸하고 강력한 절대주의 국가를 형성하여 중부 유럽을 지배함. 1867년에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건설하여 지금의 동부유럽 및 소련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지배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에 패함으로써 국토는 전쟁전의 4분의 1로 줄어들었으며, 2차 세계 대전에도 패해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가 1955년 조약에 따라 영세 중립국으로 독립함.

현재 내각책임제를 채택하는 민주주의적 연방 공화국으로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방은 9개주로 이루어져 있음. 주요산업은 건설업과 금융보험업의 서비스업이며, 알프스산 등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도 꾸준한 발전을 보이고 있음.

국토의 3분의 2가 알프스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면적은 83,858km²임. 바다가 없는 육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산악지대는 알프스산맥이 지나고, 동북쪽으로 평지와 완만한 경사지대로 이루고 있어, 대부분의 인구는 동쪽 저지대에 모여 살고 있음, 체코, 독일, 헝가리, 이태리, 리히텐슈타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음

II. 교육훈련 내용

1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IACA)

□ 강사 : Grabengor (Policy Advisor, IACA)

□ 전반적인 반부패 동향

- 2010년 아랍(튀니지, 이집트 등)의 부패는 체재를 전복시키고, 쿠데타 등으로 국가 혼란 발생
- 부패로 인한 피해
 - 법집행을 방해하는 등 정부실패
 - 기업이미지 하락시켜 R&D 등 투자를 축소시키고 궁극에는 해당 분야를 소멸시킴
- 부패로 인한 직접비용은 보수적으로 봐도 약 10억\$ 이상이며, 부패비용으로 전체 세금의 20%가 소진됨

□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개요

- 1977년 : 반부패에 대한 국제적 공조 시도
 - 미국 해외뇌물방지법(FCPA) 제정,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처벌
- 1990년대 : 반부패 정책에 대한 전환시기
 - 국제투명성기구(TI) 설립('93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95년)
 - UN반부패결의('96년), 부패라운드(OECD 해외뇌물방지협약)('99년)
- 2005년 : 반부패의 세계화(UN반부패협약 발효)
- 2006년 : 민간부문 부패에 대한 국제적 관심(FCPA법 위반 기업 처벌)
- 2011년 이후 : 반부패에 대한 개별주의에 대항한 전체적 접근 시도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설립, 민·관·시민단체·학술단체 참여

□ 유엔반부패협약(UNCAC-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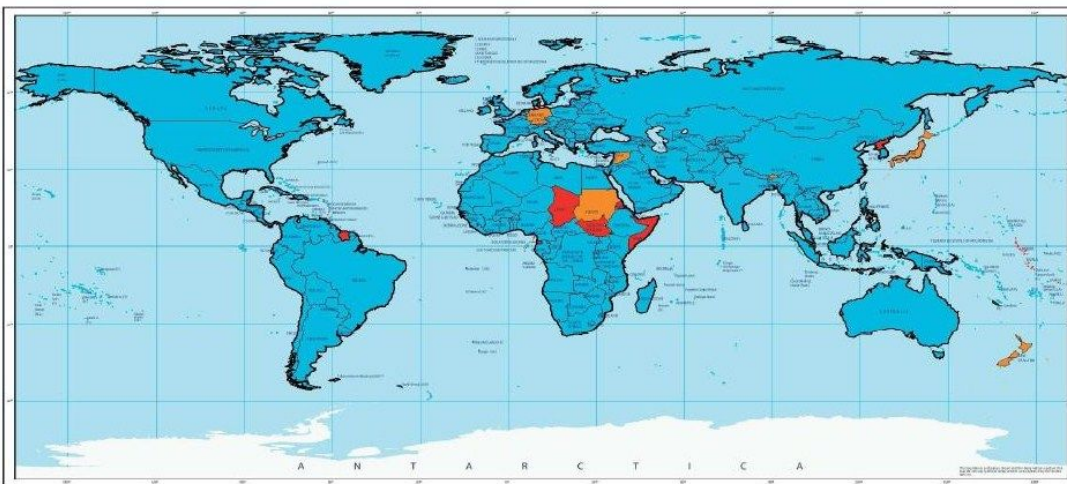
- '00년 12월 UN 총회에 산재해 있던 반부패 국제협약을 통합하여 보편적인 협약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
- '03년 10월 31일 UN 총회에서 협약 채택
- '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에서 협약 서명회의 개최

○ 목적

- 민주주의, 윤리적 가치 및 정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는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부패로 인해 고통 받는 전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 UN 반부패협약 서명 및 비준국가

UNCAC Signature and Ratification Status as of 2 April 2014



■ States Parties
■ Signatories
■ Countries that have not signed or ratified the UNCAC

Signatories: 140
Parties: 171

○ UN 반부패협약의 구성

- 총 8장 71개 조항

○ UN 반부패협약의 주요 내용

- 제1장(총칙) : 협약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 제2장(예방조치) : 부패방지정책 수립 및 이행, 부패방지기구 설립, 공공부문의 노력 촉구, 공무원행동강령, 공공조달과 공공재정 관리, 사법부 및 소추기관의 부패방지, 민간부문의 부패방지, 사회의 참여, 자금세탁방지
- 제3장(범죄화와 법집행) : 국가공무원의 뇌물수수, 민간부문의 부패, 법인의 책임, 신고자 등의 보호
- 제4장(국제협력) : 범죄인 인도, 사법공조, 법집행 협력
- 제5장(자산회복) : 범죄수익 이전의 방지 및 탐지, 재산의 직접 회복 몰수를 위한 국제협력, 자산의 처분과 반환
- 제6장(기술지원과 정보교환) : 반부패 역량강화 지원, 부패관련 정보의 수집·교환·분석
- 제7장(이행체제) : 협약당사국총회, 사무국
- 제8장(최종조항) : 분쟁해결, 서명·비준·수락·승인 및 가입

○ UN 반부패협약의 한계

- 권고사항으로 강제성의 한계
- 자국법과의 상충시 해결점에 문제

□ OECD 뇌물방지협약(OECD Anti-Bribery Convention)

○ 협약당사국 : 41개국('14.3.21)

○ 주요내용 : 전문 및 17개 조항으로 구성

- 제3조(제재) : 외국공직자에게 뇌물공여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뇌물공여로 인한 수익은 몰수 등 금전적 제재
- 제4조(관할권) : 자국 및 각 체약국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기소
- 제5조(시행) : 수사와 기소는 각 체약국에서 적용되는 규칙과 원칙에 따라 적용
- 제8조(회계) : 회계장부 부정행위에 대한 금지 조치
- 제9조(사법공조) : 신속한 사법지원과 정보 제공
- 제10조(범인인도) : 범인인도 가능

○ 뇌물방지 협약 심사제도

- 1단계 : 국내법이 협약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심사
- 2단계 : 현장 방문을 통해 협약의 실제 적용 실태 모니터링
- 3단계 : 협약 이행을 통한 실제 처벌 사례를 중심으로 실시

※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모니터링

- 현재까지 3단계가 진행 중인데, 다음 단계인 4단계심사로의 확대를 논의 중임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 부패방지를 위한 새롭고 전반적인 국제협력센터

○ 5개 주요 분야

- 교육훈련 및 연구활동의 표준화

- 맞춤형 교육훈련 및 연구활동 제공
- (학제간) 학위 프로그램 운용
- 회의 및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졸업생 협회, 컨퍼런스 참여자 등)
- 반부패 씽크탱크 및 우수사례 전파

○ IACA 서명 및 비준국가



○ 주요 프로그램

-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Summer Academies
- MACS(Master in Anti-Corruption Studies)



2 오늘날 환경에서의 부패 검토(나이지리아의 경험)

□ 강사 : Oche Godwin (Senior Academic Expert, IACA)

가 현재 환경에서의 부패

□ 부패의 본질

○ 부패의 정의

(The World Bank & IMF, 2010) ‘부패는 사익을 위해 공공의 직위를 사용하는 것’

(TI, 2011) ‘부패는 사익을 위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것’

○ 부패의 결과

- 부패는 모든 분야에서 부정적이며 경제 성장을 축소시키며, 공정한 경쟁을 왜곡
-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인프라 관련 부패, 부정선거 등 부패는 반란, 생명 위협, 빈곤 등으로 미래를 암울하게 함

○ 부패예방의 필요성

- 전세계적으로, 예방으로 향한 변화를 강조
- NSW-ICAC's의 부패 예방원칙 3개항
 - .예방은 치유보다 더 낫고,
 - .예방은 처벌보다 더 낫고
 - .예방은 관리보다 더 낫다

※ 재력과 재량이 있고 책임성이 없으면 부패가 발생하고, 기회가 있는데 개인의 청렴성과 직무분야의 도덕성을 갖추지 않으면 부패가 발생



* Money + Discretion - Accomplish = Corruption

* Opportunity - Personal Integrity - Province Ethic = Corruption

□ 부패 예방을 위한 국가적 전략

- 반부패 법령 제정
- 기관의 체제 구축 등 제도적 프레임 마련
- 접근방법 : 예방, 교육, 강제적 재제

나 나이지리아 ICPC 사례

□ 나이지리아 ICPC

- 반부패 전담기구 : ICPC(Independent Corrupt Practices and other related offences Commission)
- 역할 : 부패예방 및 교육 등을 통해 처벌의 개혁방안 제시

□ 반부패 체계 연구 및 검토 시스템

- 목적 : 부패방지 이외에 부패발생 원인 및 재발방지 수단 강구
- 연구의 계기(부패 원인 및 배경 - Trigger)
 - 업무관계자, 대중의 탄원, 미디어의 관심, 수사정보 등
- 부패위험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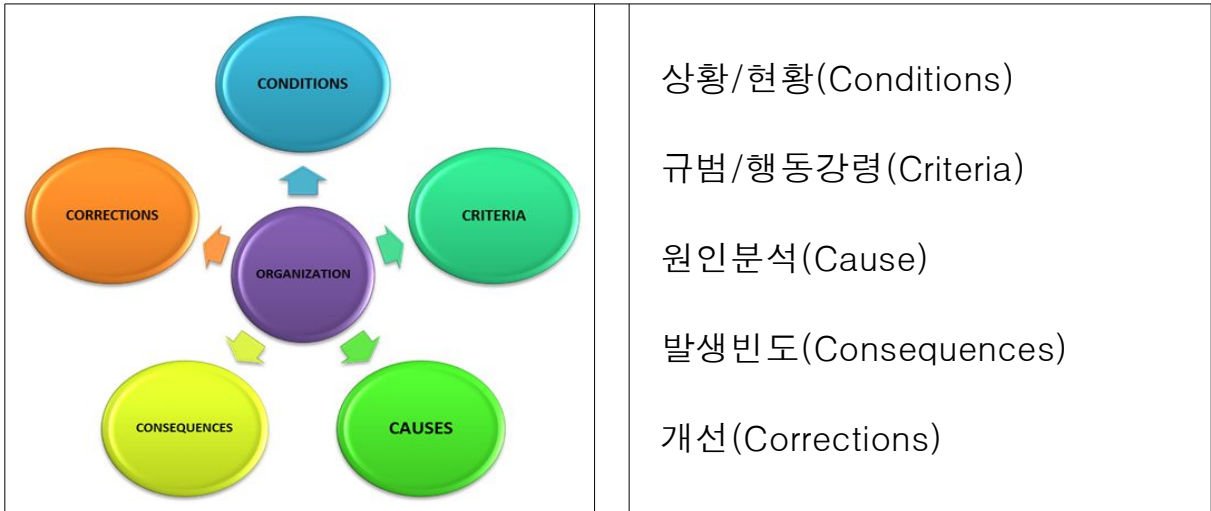
- 무수한 절차와 단계가 개입되고 많은 각료들을 거치는 장기 과정
- 의사결정과 행동의 연기
- 굉장히 많은 면대면 접촉(특히 커다란 경제적 이익들이 관여된)을 거치는 절차
- 개인에게 집중된 과도한 자유재량
- 기관의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획득 곤란
- 열악하고 불충분한 감시방법을 가진 자체 규정들에 대한 남용 또는 무시를 만드는 시스템
- 업적평가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없는 시스템
- 효율적 징계 절차의 부재

○ 연구 과정

- 목표 설정 → 적절한 수단 발굴 → 공식적 이행 절차

○ 방법론(METHODOLOGY)

- 5'C 프로세스 원칙



- 연구 매뉴얼

: 조직구조, 시스템 및 절차,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의 조직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으로 평가

- . 절차를 보다 실용적이고 쉽게 진행
- . 부패의 진단과 평가에 있어서 주관적 개입 정도 감소
- . 설명 문서(메뉴얼) 제공
- . 시스템 검토 작업 표준화

- 템플릿의 구조

조직 구조	시스템과 절차	문화	이해관계자의 인식
<p>. 의사소통 채널</p> <p>. 직원의 권리와 의무</p> <p>. 판단(재량)</p> <p>. 조직에서 위임과 권한의 유동성에 대한 고려</p> <p>. 명령 계통</p>	<p>.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연결해 각각 활동이 연결되어야 함.</p> <p># 중점사항 : 견제와 균형, 시기적정황(타이밍), 서비스질, 고객만족 등</p>	<p>. 조직 가치관과 신념, 가치와 사회성을 나누고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공유함</p> <p>. 동기</p> <p>. 직업 만족</p> <p>. 라이프 스타일 등</p>	<p>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직에 관심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시된 의견</p>

○ 분석 방법

: 리뷰 → 부패위험성 평가*(4개 분야 25개 항목) → 개선방안 모색
→ 후속조치

* 부패위험성 평가 구성 : 조직체계(25%), 시스템/절차(45%), 조직문화(20%), 이해관계자 인식(10%)

○ 반부패 추진 체계에 대한 결론

- 부패위험성 평가 전략은 ICPC의 체계연구 및 검토의 주요 수단
- 체계연구 및 검토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전략이 아님(각 조직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
- 적절한 전략의 조합만이 부패(히드라와 같은 괴물, 부패의 영구성 및 지속성)를 감소시킬 수 있음

THE EVALUATION TEMPLATE					THE EVALUATION TEMPLATE Cont'd					
STRUCTURE (25 Marks)					THE RESULT SUMMARY					
S/No.	CHECKLISTS	RESERVED MARKS FOR EACH TASK/QUE.	SCORE	REMARKS	S/NO.	Areas of Study	Marks			
1.0	Is the existing administrative structure suitable for attainment of the organizational objectives?				1.	Structure	25.00%			
1.1	Is the existing organizational chart suitable for the attainment of the organizational goals?	1			2.	Systems and Processes	45.00%			
1.2	Does the structure represent a good reporting mechanism for the organization with respect to accountability? (Some sensitive units are expected to be reporting directly to the Chief Executive Officer).	1			3.	Culture	20.00%			
	Are there policies that clearly spell out the operations of the organization?	2			4.	Stakeholders' Perception	10.00%			
2.1	Is there a legal instrument establishing the organization?	0.5			S/N	AREA	IDENTIFIED PROBLEMS	CORRUPTION RISKS	RECOMMENDED ACTIONS	FOLLOW-UP ACTIONS
2.2	Is the organization guided by extant rules?	0.5			1.	Structure				
2.3	Does the organization have operational manual relating to its core mandate?	0.5			2.	Systems & Processes				
2.4	Do members and staff pass through orientation upon engagement? The organization should provide evidence of such orientation programme for content analysis.	0.5			3.	Culture				
		2			4.	Stakeholders' Perception				

THE EVALUATION TEMPLATE

THE RESULT SUMMARY

3 Fraud Prevention / 사기방지 – Tools and Concepts (IACA)

□ 강사 : Ms. Dunker(Consultant AML & Fraud)

가 Fraud Prevention / 사기방지 – Tools and Concepts

□ 사기(Fraud)의 개요

○ 사기의 법적 정의

-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손실을 야기하는 것
- 사기에 있어서 이익이란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이익 (특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 내포

※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법조항 분석으로 그 나라의 주요 범죄 형태를 알 수 있음

○ 사기의 형태 : 다양한 형태로 발생

- 위조, 횡령, 조달과정에서 부패, 문서조작, 자금세탁, 비자금 조성 등

○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기 형태

- 세금 : 탈세
- 계약 : 계약 전과정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음
- 사회보장 : 연기금, 의료보험, 실업수당, 출산수당 등
- 공공보조금 : 문서위조 등을 통한 보조금 지급 등

○ Fraud Triangle(사기 발생의 3요소)

- 동기(Motive)
- 기회(Opportunity)
- 합리화(Rationalization)

□ 사기(Fraud) 위험관리 방법

○ 사기 위험 평가(Fraud Risk Assessment)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분석과 지속적인 개선 필요

○ 사기 방지 조치(Prevention)

- 예방을 위한 절차 및 가이드라인, 행동강령 마련
- 위험성 직무는 순환보직, 직무를 분리 및 견제 역할 부여
- 위험신호 관리, 모니터링, 상급자의 확인
- 행동강령 및 그에 대한 처벌규정 명확화
- CEO의 사기 예방 의지, 조사·감사의 인적·물적 지원
- 내부신고 시스템 구축

○ 사기 적발 메커니즘(Detection)

- 내부신고 시스템
- 감사, 사고분석, 내외부 보고서
- 민간부문에서의 혐의거래 보고(STR)

○ 제재(Sanctioning)

- 형사처벌 등을 고려 충분한 증거 확보, 징계 처분에 대하여 공개, 벌금, 환수, 계약해지 등

□ 제재 미흡 시 문제점

○ 전부에 대한 신뢰 저하, 기업 이미지 훼손

○ 직원의 사기 감소

○ 투자자, 공급업체, 고객의 불신 및 비용 증가

☞ 사기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

나 사기 방지 그룹별 토론

□ 토론 방법 : 각 조직별 사기 예방 및 부패방지 방법을 강구

□ 1 Group

- R&D 투자 관련 적극적인 감사 실시
- 검수단계의 크로스체킹 필요
 - 타부서원을 투입하여 검수, 검수사진을 첨부 등

□ 2 Group

- 고위직 솔선수범
- 불시휴가제 등 보직변경을 통한 타인에 의한 모니터링 강화
- 업무별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기평가제 도입
- 기안자 의도와 다르게 상급자 압력 행사시 공정한 징계 필요
- 예방적이고 지속적인 청렴교육 실시

□ 3 Group

- 부패신고시스템의 무기명·익명성 보장 필요
- 징계강화(100만원 이상 등)
- 청렴도 평가시 사기 위험성 평가 후 별도 교육 실시
- 국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강화

「IACA 홈페이지 권익위 연수단 방문 관련 뉴스(www.iaca.int)」



「IACA 권익위 연수단 방문 사진」



4 국제옴부즈만협회의 노력 (IOI)

□ 강사 : Mr. Käuter (Secretary-General, IOI)

가 국제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 기관 소개 >

- 설립목적 : 옴부즈만 확산 및 옴부즈만 제도의 연구·발전을 장려하고, 각 기관 협의체 정보 교류를 통한 민주행정의 발전방안 모색('78년)
- 회원 : 6지역 90개국 190개의 회원으로 구성
* 6개 지역 : 아시아, 유럽, 북미, 카리브·남미, 아프리카, 태평양·호주
- 사무국 : 사무총장, 사무국장 등 3명(오스트리아 비엔나)

□ 주요업무

- 공공부문에 대한 독립적 모니터링 실시
- 인권보호 담당(유엔조항에 따라 국가별 예방체계 담당)
- 제도개선 권고 기능 시행
- 지역별 보조금을 지급하여 교육지원

□ 국제옴부즈만협회(IOI)의 기능

: 공공서비스 증진, 공정한 행정 제공 모니터링, 인권보호

□ 국제옴부즈만협회(IOI)의 사무국 역할

- 정보제공,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보조금 지급
- 옴부즈만 독립활동 지원
- 연구 및 지원
- 국제옴부즈만 컨퍼런스 기획·운영
- 백서 작성·보고 및 전체 성과 보고

□ 국제옴부즈만협회(IOI) 주요사업

○ 지역별 교육 지원

- '09년 이후 55개 국가 220명 옴부즈만 교육 지원
- IOI&IACA 협력 반부패훈련, QMU 민원조사 세미나, SYT 훈련
- 민원분석 방법, 조사기법, 인터뷰 방법, 증거분석, 대화법 집중 교육
- 연구 장학금 제도 운영

○ 옴부즈만 제도 연구 활동

- 법체계, 정치체계,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
- 태평양·호주 및 유럽 옴부즈만 지역 비교 연구
- ※ 아시아 옴부즈만 비교는 진행 중

○ 특성화된 지역별 정보 공유 및 보조 활동

-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한 우수사례 및 지식공유
- ※ 남미지역 : 교육참여비, 유럽 : 워크숍, 북미 : 웹비나(웹세미나) 등

나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Austrian Ombudsman Board)

□ AOB 개요

- 목적 : 공정하고 공평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인권에 대하여도 관여
- 설립년도 : 1977년
 - 1977년 : 연방정부 차원의 옴부즈만 제도를 한시 입법으로 도입
 - 1981년 : 헌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
- 구성 : 3인의 옴부즈만
 - 임기 : 6년, 연임 가능
 - 정당에서 추천한 옴부즈만에 대하여 의회 내 선거를 통해 선출
 - 고충, 민원, 인권 등의 처리를 위해 30여명의 직원(법률전문가)이 옴부즈만을 지원
 - ※ 9개 주(지방자치단체) 중 7개 주에 지방옴부즈만이 설치되어 있음

○ 역할 : 연방정부의 모든 행정처리에 대한 모니터링 권한

※ 민간사건 및 사법부 판결에 대하여는 지원 제외

- 고충민원 처리, - 부패 예방 활동

□ 처리 절차

○ 고충민원 신청 : 누구든지 신청가능

- 나이, 국적,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오스트리아 행정과 관련된 불만사항에 대하여는 신청 가능
- 민원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옴부즈만 자체적으로 조사 가능
- 신청방법은 이메일, 우편, 전화 모두 가능

○ 조사 실시

- 옴부즈만이 증인의 증언 청취,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직접 조사 실시
- 관련기관 또는 주지사에게 고충민원을 이첩하는 경우도 있음

○ 조사 결과 통보

- 조사과정에서 문제를 확인한 경우 관련기관에 시정 및 제도개선 권고 조치

※ 권고를 받은 기관은 8주 이내에 필요한 조치 강구 및 옴부즈만에게 결과 통보

○ 민원인에게 옴부즈만 시정·권고 및 관련기관 조치 결과를 통보

— <2013년 AOB 민원처리 실적> —

- 민원접수 현황: 약 19,000여건
 - 우편에 의한 접수 : 약 14,000건, 컨설팅 DAY : 225건, 등
- 민원 처리현황 : 약 8,000건(접수건수의 42%를 상세조사 실시)
 - 이중 16%(약 1,200건)은 권고 및 시정 조치

□ 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보고 및 홍보

○ 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

○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 주간 TV쇼를 통해 홍보

- 옴부즈만에 대한 홍보 및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국민지지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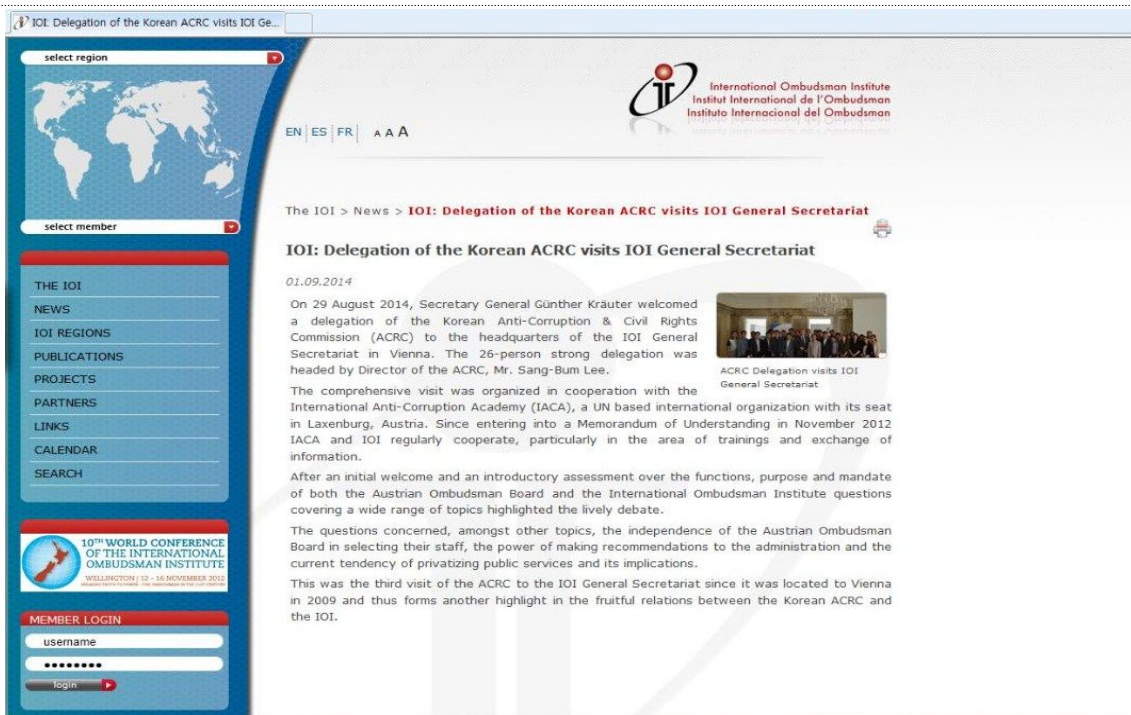
○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민간이양에 대한 옴부즈만의 입장

- 모니터링 권한 축소로 인하여 견제기능 상실에 대한 우려 표명
- 민영화가 되더라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

< 오스트리아옴부즈만협회(AOB)의 홍보수단 >

- TV쇼(공공채널, 20% 이상 시청률, 토요일에 방영)를 통하여 불합리 또는 불공정 문제에 대하여 민원인과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해결 결론 도출 및 제도개선 권고 방안 제시
- 특별한 사건이 있으면 신문, 잡지, 라디오 등을 통하여 광고 실시

「IOI 홈페이지 권익위 연수단 방문 관련 뉴스(www.theioi.org)」



5 UN 마약범죄국의 노력 (UNODC)

< 기관 소개 >

- 설립목적 : 전 세계적인 부패, 불법마약유통, 범죄예방 및 범죄사법, 국제테러에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립('97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 조직 : 1개 본부(집행국장실 외 4개과), 2개 연락사무소, 21개 지역사무소
* 4개과 : 기획집행과, 조약과, 정책분석협력과, 운영예산과
- 인력 : 약 550명
- 주요기능
 - 부정부패, 조직범위, 인신매매, 테러방지 활동
 - 약물규제 및 마약범죄 예방
- 관련협약 : 국제조직범죄협약('00년), UN 반부패협약('03년)

□ UN 반부패협약(UNCAC)

○ 연혁

- 행동강령 및 선언문 발표('96년)
- 협약서 마련을 위해 '02년 1월부터 '03년 10월까지 UNODC 주관으로 7차례 임시위원회 개최
- '03. 10. 31 : 제58회 유엔 총회에서 협약 최종안 채택
- '03. 12. 9 : 멕시코 메리다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0여 개국 정부 대표(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UNCAC 서명회의 개최

○ 우리나라 비준

- '03.12.10 : UN부패방지협약에 서명한 후, 범정부 차원에서 동협약의 비준 추진
- '08.2.26 : 협약의 이행입법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 '08.2.29 : 「UN부패방지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협약 구성 및 주요내용 : 5개 영역 8장 71개 조항

□ UN 반부패협약(UNCAC) 주요내용

○ 제2장 : 예방조치(Preventive measures)

〈 UN반부패협약 관련 조항 〉

(5조)부패방지정책 및 시행 (6조)부패방지기구 (7조)공공부문 (8조)공무원행동강령 (9조)공공조달 및 공공재정관리 (10조)공공보고 (11조)사법부문 (12조)민간부문 (13조)사회의 참여 (14조)자금세탁 방지

○ 제3장 : 범죄화와 법집행(Criminalization & law enforcement)

〈 UN반부패협약 관련 조항 〉

(15조)자국공무원의 뇌물수수 (16조)외국공무원 뇌물수수 (17조)공무원의 횡령·배임 (18조)영향력 행사 (19조)직권남용 (20조)부정축재 (21조)민간부문 뇌물 (22조)민간 부문 횡령 (23조) 범죄수익 세탁 (24조)은닉 (25조)사법방해 (26조)법인의 책임 (27조)참여와 미수 (28조)인지와 의도 (29조)공소시효 (30조)기소, 재판, 제재 (31조)동결, 압수, 몰수 (32조)증인·피해자 보호 (33조)신고자 보호 (34조)부패행위 결과 (35조)손해배상 (36조)전담기구 (37조)법집행기관과의 협력 (38조)국가기관 간 협력 (39조)국가기관과 민간부문의 협력 (40조)금융 비밀 (41조)범죄기록 (42조)관할권

○ 제4장 :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 UN반부패협약 관련 조항 〉

(43조)국제협력 (44조)범죄인 인도 (45조)수형자 이송 (46조)사법공조 (47조)형사절차 이관 (48조)법집행 협력 (49조)합동수사 (50조)특별수사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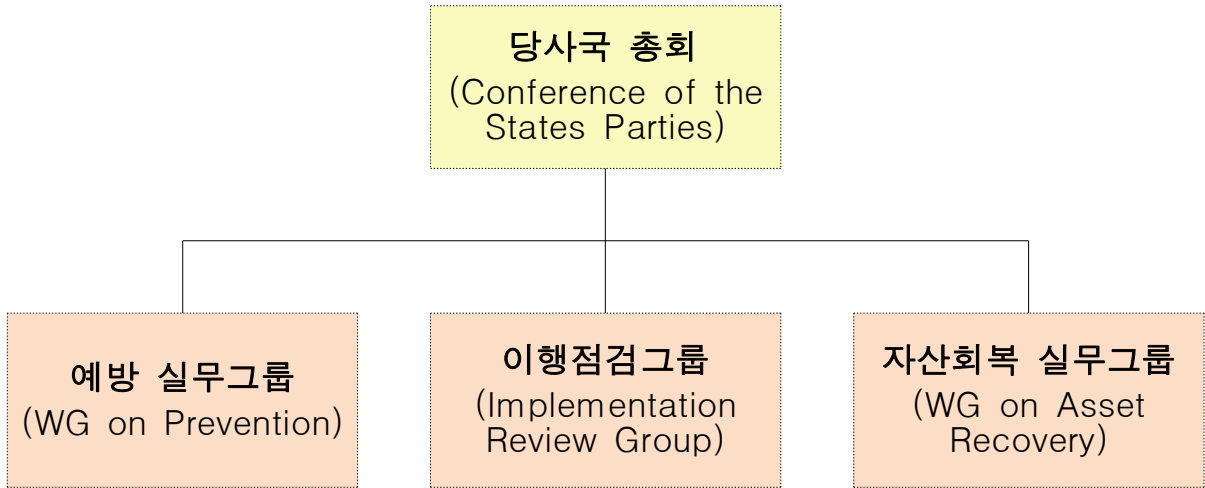
○ 제5장 : 자산회복(Asset recovery)

〈 UN반부패협약 관련 조항 〉

(52조)범죄수익 이전의 방지 및 적발 (53조)재산의 직접회복 조치 (54조)몰수 관련 국제협력을 통한 자산회복 체계 (55조)몰수를 위한 국제협력 (56조)특별 협력 (57조)자산의 반환과 처분 (58조)금융정보기관 (59조)양자·다자 협정

□ UN 반부패협약 이행점검 체계(Implementation Review Mechanism)

○ UN 반부패협약(UNCAC) 관련 조약기구 구조



○ 점검 체제(Review Mechanism)

- 1단계(phase)는 2사이클(각 5년)로 구성

〈 UN 반부패협약 점검 체제 〉

(첫번째 사이클) UNCAC 제3장(Criminalization and law enforcement)과 제4장(International cooperation)의 이행에 대해 점검
(두번째 사이클) UNCAC 제2장(Preventive measures)과 제5장(Asset recovery)의 이행에 대해 점검

- 점검대상 국가는 매 사이클 초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점검 국가 또한 매년 초 추첨을 통해 두 나라가 선정됨(인접국가 1, 비인접국가 1)
- 요약보고서는 의무 공개, 전체보고서는 점검대상국가 공개여부 선택
 - ※ 2014년 현재 1단계 5년 차임
- '15년부터 두 번째 사이클로 UNCAC 제2장(예방조치)과 제5장(자산회복)의 이행 여부 점검 예정

○ 점검 단계(Phases of the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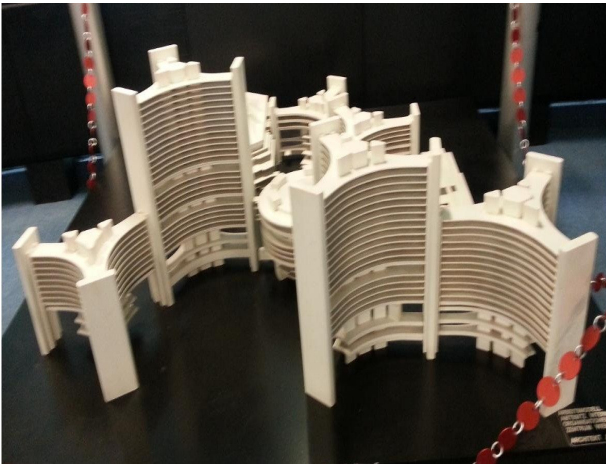
- 자가진단(Self-assessment) : 포괄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 서류검토(Desk review) : 해당 점검국
- 점검대상 국가와 점검국 간의 대화(전화, 메일 등)
- 방문 심사
- 결과보고서 산출

* 요약보고서는 공개, 전체보고서는 점검대상국가에서 공개여부 선택

□ 우리나라에 대한 점검 현황

○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UNCAC 이행 점검을 진행 중

- 우수 : 국민권익위 예방 활동, 반부패 법령체계
- 문제점 :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6 오스트리아 경제범죄 및 부패 전담 검찰청의 노력(WKStA)

□ 강사 : Bernard Weratschnig (Senior Public Prosecutor, WKStA)

< 기관 소개 >

- 설립목적 : 경제범죄 및 부패방지 목적으로 설립, 검찰조직에 포함('09년)
- 조직 : 1명 소장, 8개 팀으로 구성
- 인력 : 검사 25명, 경제전문가(회계사) 6명, IT전문가 1명, 대변인 1명
- 주요기능
 - 부정부패, 경제범죄, 세금을 포함한 금융범죄에 대한 조사·기소·상소
 - UN반부패기구, EU 반부패 전담기구와의 협력

□ 연혁 및 관할 범위

- 2009.1.1. : 부패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기관으로 발족
- 2011.9.1. : 경제범죄까지 관할범위 확장
- 2012.9.1. : 세금을 포함한 금융범죄까지 관할범위 확장

□ 권한(jurisdiction)

- 관할권 : 오스트리아 전체 주민
- 수사대상 : 3,000유로 이상의 부패사건(공공, 민간), 5백만유로 이상의 경제범죄(중대사기, 횡령, 금융사기)에 대하여 수사
 - * 수사대상 사건은 WKStA로 이관되어 수사
- 수사권한
 - 관련기관에 자료요청, 지시 권한 보유
 - 증권금융감독원, 연방 부패방지국(BAK), 세금관련부서, 재정부, 감사원, 회계사 등과 협력하여 수사

□ 공익·부패 신고 웹사이트(<https://www.bkms-system.net/bkwebanon/report/>)

○ 구축배경

- 부패사건의 경우 금품수수나 공여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며,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많음
- 부패방지를 위하여 내부고발 등 새로운 신고 시스템이 필요
- ↳ 2009년 BKMS사(독일)에서 개발한 신고사이트 도입

○ 신고시스템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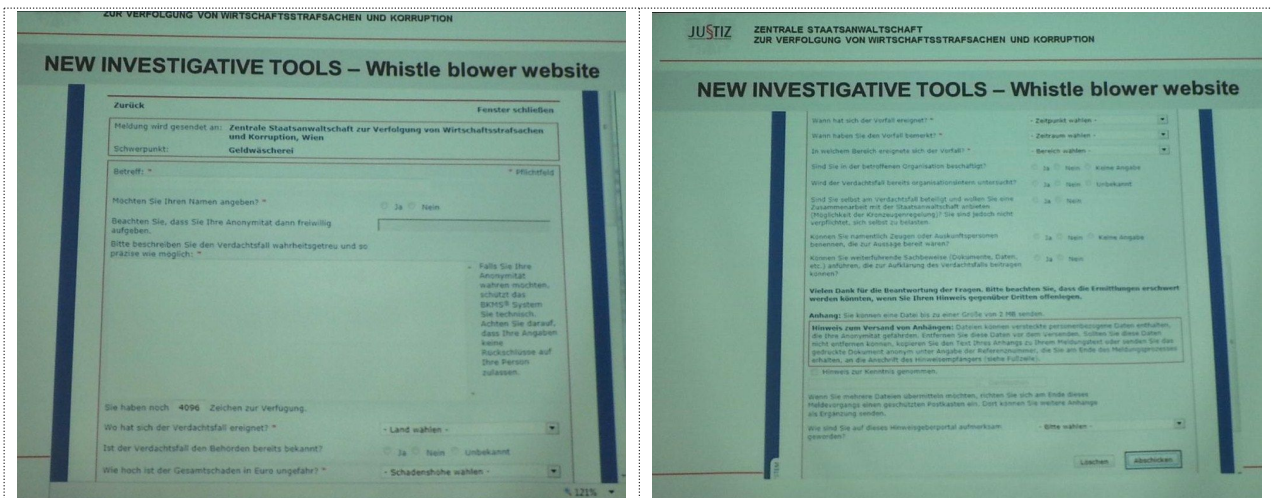
- 인터넷 접속, 무기명 신고 가능(IP주소 추적 불가)
- 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와 소통 가능, 독일어/영어 2개 국어 제공
- 6개 분야 : 부패, 경제범죄, 사회보장, 금융, 회계·주식, 자금세탁

○ 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 현황 : 총 1,237건('14.3월 기준)

- WKStA 구체적 분석 건수 : 413건(33.4%) 중 58건 사건화
·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타기관 이첩 : 355건(28.7%)
- 증거 불충분 등으로 종결 : 469건(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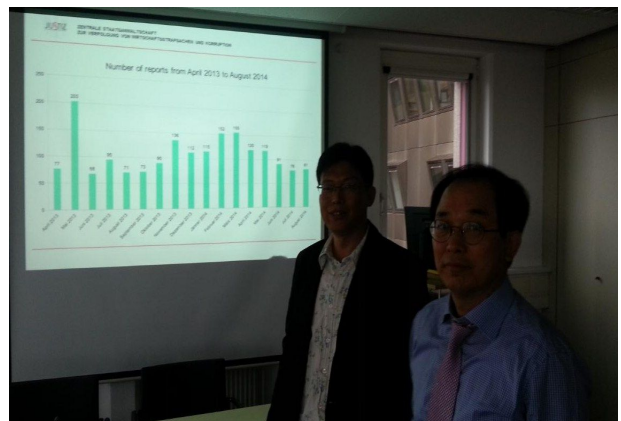
○ 신고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없음

○ 신고시스템 화면



□ 감경·보호제도(Leniency Programme)

- 주요내용 : 자수 등 검찰에 협력한 대가로 기소면제, 형의 경감, 보호 프로그램 등
- 부패사건 자수 시 기소유예하거나, 벌금 또는 사회봉사 명령
 - ※ 민사사건에 대하여는 보호되지 않음
- '11년~'1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증인보호프로그램
 - 신고자나 증인에 대하여 보상, 보호, 원상회복 등의 조치
 - ※ 증인보호를 위해서라면 신분변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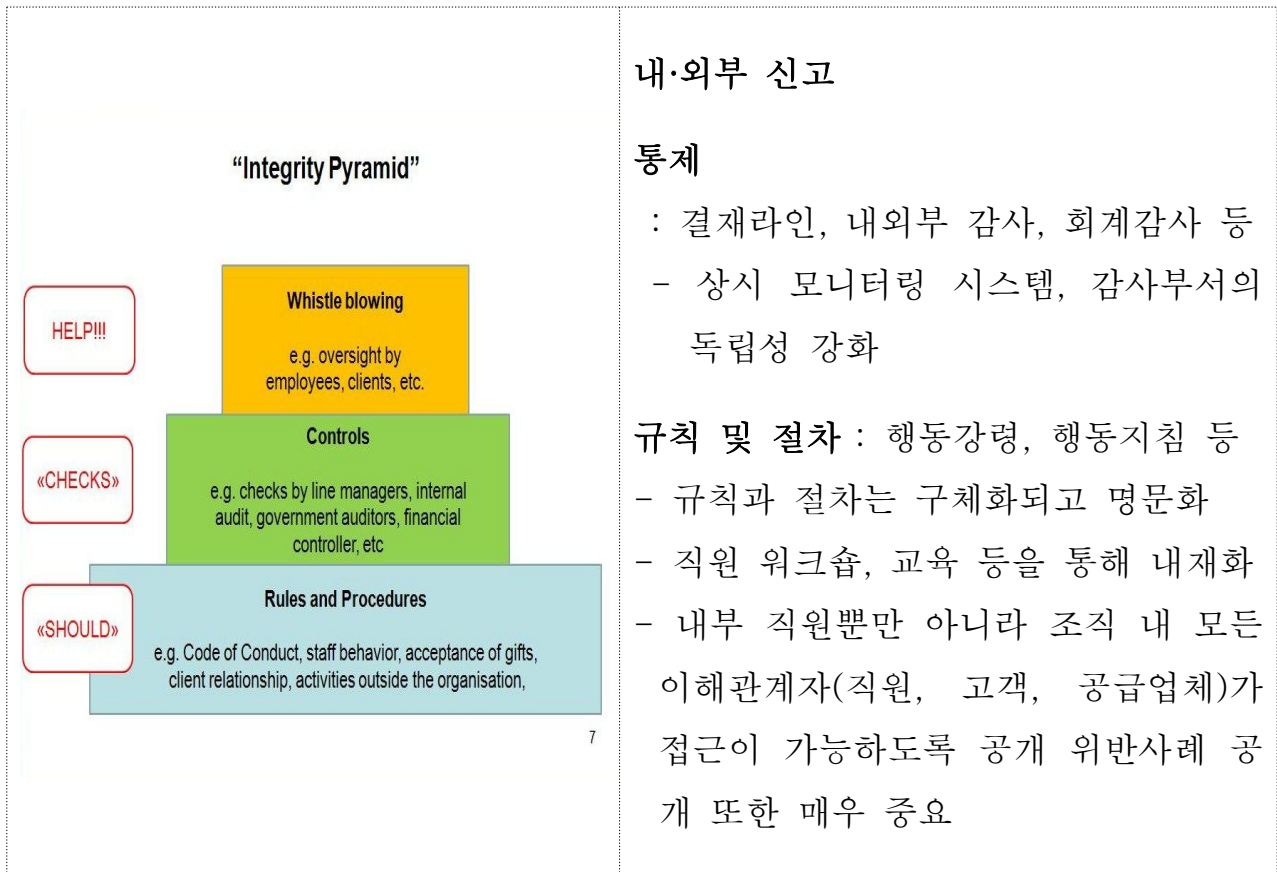
7 Organizational Integrity – 사례중심 (IACA)

□ 강사 : Ms. Arndorfer (Audit Manager,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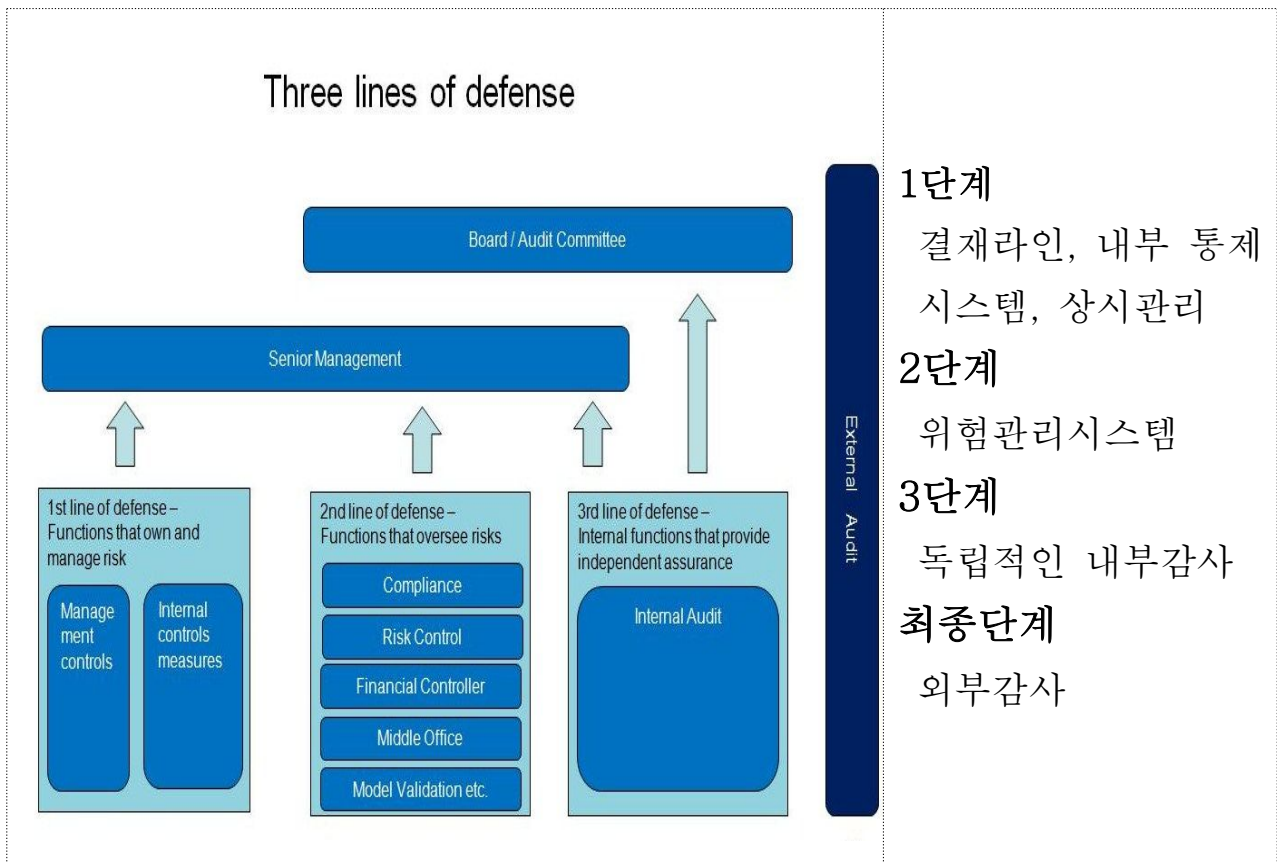
1 Organizational Integrity

□ 조직의 청렴성 향상방안

- 상급자와 직원 상호간에 있어 모범, 공정성, 공감의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청렴도는 향상
- 청렴은 개개인 모두에게 중요하며, 재량권 남용은 기관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높음
- Integrity Pyramid(청렴도 향상을 위한 3가지 체계)



○ 부패방지 4단계 체계



○ 조직형태에 따른 통제 도구

- 민간기업(높은 이직률, 지속적 혁신) : 안정적 프로세스 도입
- 공공기관(낮은 이직률, 변화가 적은 기관) : 순환전보, 책임과 역할 부여, 지속적인 피드백

○ 내·외부 신고 활성화 방안

- 독립적인 부서에서 전담(준법감시자, 외부윤리기관)
- 신고시스템에 대한 홍보 및 실제 발생사례 전파
- 신고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공감도, 실효성에 대한 설문조사

2 Organizational Integrity_사례중심

□ 프랑스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 금융사고(2008년) [사례 1]

○ 사건개요

- 2008. 1. 28일 소시에테 제네랄(SG)은 승인받지 않은 거래로 인해 49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
- 제롬 케르비엘(당시 31세)이라는 트레이더가 승인받지 않고 위험자산(선물 등)에 대해 대규모 거래

○ 발생원인

- 매일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부재, 직속상관의 무관심
- 회계부서에 보고할 때 시세 변경 등 기록을 조작
- 내부 현금거래에 대한 감시가 소홀함을 알고 다른 내부 현금 활용
- 회사내 경험있는 직원이 부족하고, 성과주의 문화
- 다양한 경고 메시지(선물거래소에서 이의제기 등)에 대한 무시

□ UBS 은행 금융사고(2011년) [사례 2]

○ 사건개요

- 2011. 9. 15일 UBS 런던지사에서 허가받지 않은 임의매매로 20억\$ 손실 발생
- 크위쿠 아도볼리(당시 31세)이라는 트레이더가 문서조작 등을 통해 선물 등 위험자산 임의 거래

○ 발생원인

- 문서 조작을 통한 거래
- 비통제 대상인 내부거래 이용
- 상급자의 관리 부재

□ 리보(LIBOR¹⁾) 금리 조작 사건(2012년) [사례 3]

○ 사건개요

- 영국의 리보금리가 전세계 주요 은행(18개)에 의해 조작된 사건
 - ※ 리보금리 : 영국 대형 은행들이 제시한 금리를 기초로 산정된 평균 금리
- 일부 은행들은 이와 관련하여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았고, 기관 투자자, 지방자치단체, 주택 담보대출자들이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 진행 중

□ 사례를 통한 반성

- 1차적으로 직상급자의 통제 강화 및 권한 분산
- 내부 통제시스템·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위험분석 등을 통한 지속적 개선
- 독립된 감사·조사부서의 주기적인 점검

다 조직 청렴성 제고 방안

□ 기관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직무순환제도(감사, 외부공급자, 회계담당자 등은 2~3년에 실시)
- 업무처리의 전산화
- 유기성 있게 업무가 전환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 기관장의 부패행위 발견시 가중 처벌 실시 및 이에 대한 홍보 실시

□ 기관의 청렴성 향상과 부패차단을 위한 감사운영(유럽의 감사운영 사례)

- 담당자별 전문분야 양성 및 담당

1)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s) : 전세계 금리 산정의 중요한 지표로 파생상품 및 대출규모가 800조 \$에 달함

- 은행권은 위험분야 연초 분석 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위험 분야를 선택하여 감사 실시
- 이사회에 감사결과 보고 등 독립성을 강화하여 운영
-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담당자를 선임(유럽 내 주요은행 사례)
- 기관장 및 임원급에 대한 감사는 외부감사를 선임하여 실시
-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국가감사기관에서 실시

□ 일상감사 체계 운영

- 예방에 중점, 적발과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3개월간의 자료를 토대로 감사자료 활용

Fraud case: LIBOR rigging (2012)

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 main interest benchmark

Worthless Benchmark
How the benchmark interest rate Libor is calculated – and the influence banks have on it

Example: Dollar Libor

- The 18 banks on the panel* report daily on the interest rates they were (allegedly) charged to borrow money.
- The data is collected by Thomson Reuters
- Of the 18 reported interest rates, the highest and lowest four are discarded. An average is calculated using the remaining 10, which becomes the Libor for the day and loan period in question.

*as of June 1, 2012

21

Ⅲ 국제 반부패 정책 적용 방안

1 조달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방지 방안

□ 추진배경

- 사기 방지 방안의 조직내 적용을 통한 청렴기관 구현
- 입찰 계약과정 등 조달분야의 부패소지 차단

□ 조달분야 부패요인 사전 차단 방안

1. 계약과정에서의 입찰 담합 방지

- 문제점
 - 건설계약 입찰 과정에서 계약참여자가 담합을 통해 공정경쟁 저해 (계약 금액 증가로 국가 예산 낭비)
- 원인
 - 적발가능성이 낮고 처벌수준이 미약(과징금 등)
- 적용방안
 - 담합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과징금 미부과, 신고보상금 지급)
 - 적발시 담합에 대한 처벌 강화(이익보다 손실이 많도록 강화)
 - 적발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발 시스템 구축(항목별 설계 금액 비교)

2.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 문제점 : 입찰참여업체에서 평가위원 매수 및 불공정한 평가 유도
- 원인
 - 외부평가위원에 대한 처벌 미흡
 - 평가항목의 비계량 및 추상적 평가
- 적용방안
 - 외부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및 내부직원과 동일한 처벌규정 적용
 - 평가항목에 대한 계량화, 차등폭 명확화
 - 평가 세부내용에 대한 공개

3. 회사 내부 정보 유출 방지

○ 문제점

- 계약과정, 자재선정 등의 과정에서 내부검토 문건, 의견 등 내부 정보를 계약상대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유출

○ 원인

- 내부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 부족
(비밀엄수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인식 부족)
- 우리나라 연고주의 등에 따른 거절 문화 미흡

○ 적용방안

- 내부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조항 교육 및 인식 제고
- 연고주의 배제를 위한 행동지침 제정 및 지속적 교육 실시
- 전관예우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사적인 만남을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제재)

4. 납품자재 품질 강화

○ 문제점

- 중국산 저가자재,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 납품(시험성적서 위조 등)

○ 원인

- 사급자재(시공사에서 직접 구매)에 대한 감시 미흡
(시험성적서 확인, 샘플링 조사를 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

○ 적용방안

-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처(공공기관)에서 직접 구매 및 검사
- 시험성적서 위조 방지를 위해 시험성적서 의뢰는 시공사가 아닌 발주처에서 의뢰하고 확인연고주의 배제를 위한 행동지침 제정
- 샘플링 검사에 대한 절차·기준의 명문화

5. 특정자재, 신기술, 특정공법 도입시 유착 방지

○ 문제점

- 특정자재 등의 선정과정에서 투명성 미흡
- 일부 간부 등의 영향력 행사로 선정

○ 원인

- 특정자재에 대한 규격 및 기준 미흡
- 선정과정의 공론화 부족

○ 적용방안

- 특정 공법·자재 등에 대한 기본 기준 마련
- 특정 자재 선정시 동일 기능의 자재가 있는 지 여부를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토
- 선정과정에 대한 단계적 절차 강화
 - ※ 내부검토→외부 공개 및 검증→청렴옴부즈만 등의 의견수렴→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위원회 개최→결정

2 부패방지 교육 확산, 정책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 추진배경

- 국제기구인 IACA(국제반부패아카데미) 벤치마킹을 통하여 실질적인 부패방지 및 척결방안을 적용하여 CLEAN 기관 구현
- 반부패 업무 추진과정에서 들어난 취약분야에 대하여 제도개선 및 청렴교육 등을 통하여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

□ 내 용

1.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
 - 의무적으로 청렴연수원 고위공직자 과정을 이수토록 제도화(연1회)
- 관리자급 청렴교육 실시
 - 관리자급(과장, 지방청 과장 등) 청렴집합교육 실시(년1회)
- 반부패 청렴교육 전 직원 의무이수제 실시
 -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외부청렴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 실시 의무화(지방청은 자체 워크숍 추진시 의무적 실시 규정화)
- 감사업무담당에 대한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인증 획득
 -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청렴연수원이 주관하는 전문강사 인증 획득 유도
- 해외 반부패 교육훈련 참가를 위한 지원 확대
 - 감사업무담당자의 해외교육 훈련 적극 지원

2. 청렴옴부즈만 제도 개선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렴옴부즈만의 기능 및 역할 확대

기능 및 역할

- 주요사업 및 부패취약분야 등 부패통제에 관한 시정요구 및 권고, 감사요구
- 조사 관련 고충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자문
- 반부패청렴 제도 또는 그 운영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자문

- 우수 운영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제도 활성화
- 청렴옴부즈만 자격 기준 구체화(규정 개정)

3. 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확대
 - 국장급이상에서 과장급이상으로 공개대상 확대 추진
- 수의계약 현황 공개 확대 실시
 -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공개하고 있으나 전면 공개 추진
- 청렴위반,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업무게시판에 게시하여 청렴 의식 고취
- 그 외 정책의 투명성을 위해 공개 가능한 자료 확대 추진

4. 그 외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 추진

- 청렴업무담당자 및 청렴활동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확대 운영
 - 청렴 마일리지 우수자 외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확대 추진
- 규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 부패방지 척결을 위한 관련 규정 현실화
- 타 기관 우수사례 공유
 -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적용
 - 부패 척결을 위한 기관간 지속적 협력관계 유지
- 청렴 관련 자료 지속적인 홍보 실시

□ 기대효과

-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의식의 내면화
- “내부신고” 활성화를 유도하여 CLEAN 기관 구현
- 정보공개 확대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 청렴지킴-e 제도 운영

운영 개요

- 목적 : 민원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의 금품, 향응 제공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패 흐름을 통제 ⇒ 청렴 기관 기반 조성
- 기간 : 2008. 3. 24. ~ 현재 (분기별 실적 분석)
- 대상 : 부패취약 대민업무 등
- 조사방법 : 민원처리 및 실태조사 결과 등록 다음날 문자메시지 및 e-mail 설문조사 실시
- 설문내용 : 민원인, 복무기관에 청렴이미지, 친절도, 금품제공 요구 등
- 주요기능 : 청렴지킴-e 설문 결과에 대한 금품수수, 불친절 등 사후통제

□ 문제점

- 익명성 보장이 안 되어 기관 민원업무의 부패유형이나 부패발생에 대한 솔직한 정보 획득에 한계(현재까지 금품향응 사례 없음)
- 등록대상자 이메일의 정확성 및 메일 발송 성공률, 응답률 제고 방안 모색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한 지속적 노력 부족
 - 이메일 발송 성공률은 평균 80% 이상이나 응답률은 10% 내외
- 업무특성별로 부패위험요인 재진단을 통해 운영 분야 변경 및 범위 확대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 노력 부족
- 민원신청인과 피 실태조사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관 청렴도 및 친절도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추가 되어 사후통제 기능 약화

□ 제도 발전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 도입

- 오스트리아 경제 및 부패전담 검찰청(WKStA)의 사례
 - 새로운 조사 기법 도입 배경 : 신고자도 없고, 희생자도 없고, 증거도 없는 부패에 대한 핫라인 개설 필요

○ Whistle blower Website 개설('13.3)

- 특 징 : IP주소가 필요없이 무기명 가능(기명도 가능)
- 장 점 : 접근 용이성, 신고를 위한 문턱이 낮아짐, 시스템을 통한 신고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가능

□ 적용 방안

○ 주요 내용

- 민원인 및 업무 관련자에게 설문 메일을 발송하는 청렴지킴-e 시스템은 청렴도 및 친절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 기존대로 운영
- 금품요구 등 부패행위 부분은 별도의 공익 신고사이트를 구축, 청렴지킴-e 시스템에서 연계되도록 구성 운영(IP 추적이 불가하고 익명성을 보장)

○ 설문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 익명의 공익신고 사이트 구축

- 청렴지킴-e시스템과 연계(안내)되는 공익신고 사이트 운영으로 민원신청인과 피 실태조사 기관 담당자의 솔직한 답변 유도
- 무기명 신고를 통한 접근용이성 및 신고율 제고 효과
- 공익신고사이트 적극 홍보

○ 업무 유형별로 부패위험도를 재진단, 운영 분야 확대(현재 4개 분야)

- 금품 및 향응요구 및 제공이 예상되는 계약 분야, 국민에게 특혜로 인식되어 직원 비리개입 가능성이 많은 업무 분야 등

○ 신고내용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및 통제를 통해 기관 청렴도 및 친절도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서는 청렴지킴-e 운영 내실화

- 적발 및 처벌 중심의 시스템 운영으로 청탁, 온정주의에 대한 내부통제 효과

□ 기대효과

○ 무기명 공익신고 사이트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직원의 부패노출 개연성을 낮추고, 신고내용 분석으로 업무별 부패위험도 진단 가능

○ 무기명 신고에 따른 부패 신고율 증대, 부패예방 및 사후 처리 강화를 통한 고객 만족도 및 조직 청렴도 향상

□ 문제점 및 현황

- 전체민원은 소폭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고충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등 정보화 사회로 온라인 민원 급속 증가

.전체민원은 '09년 74,055건 대비 '13년 74,869건으로 '09년 대비 1.1% 증가
 .고충민원은 '09년 10,387건 대비 '13년 14,968건으로 '09년 대비 44.1% 증가
 .특히 고충민원 중 온라인민원은 '09년 7,914건 대비 '13년 12,550건으로 '09년 대비 58.6%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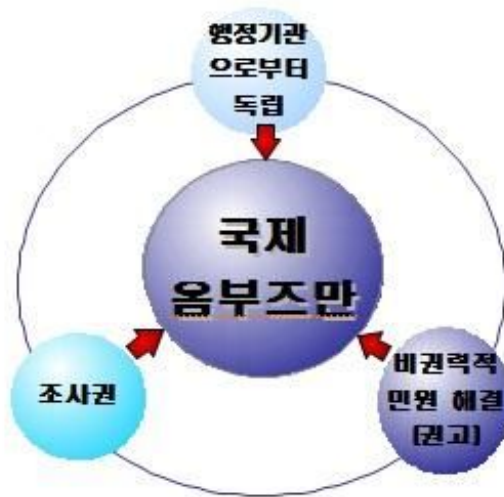
-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국민권익위원회(국가옴부즈만)에 제기하는 고충민원 건수가 전체 서식민원 접수 건수와 비슷
-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각분야 전문인력 부재로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대해 민원인 만족도가 매우 낮음
- 복지국가 지향에 따른 행정권 강화 현상은 행정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시민의 권리침해 가능성 증대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기존의 권리 구제 수단은 고비용이며, 절차나 방법이 복잡하고 이용이 어려워 기능보완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적용방안

- ☞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전문적·중립적 민원해소 전담 민간기구 필요

○ 국제옴부즈만협회(IOI) 모델 - 선진 모델

- 주요기능 : 정부의 행정에 관한 국민들의 민원(complaints)을 조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에 적절한 수단을 권고



【옴부즈만의 개념적 요소】

공공부문의 옴부즈만

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진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정부기관이나 그 구성원으로부터 발생된 민원을 조사하여 적정한 행위를 권고하고 이의 이행을 위하여 언론에 공표하거나 정부나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

○ 적용방안

- 설치유형 : 합의형 옴부즈만

▷ 기관장 직속(집행기관 및 지방의회로부터 직무상 독립)

- 조 직 : 위원 10명 정도, 사무국

.위 원 :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행정과 법률 등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자 (상임 1명, 비상임 9명)

.사무국 : 옴부즈만의 심의.의결을 보좌

- 주요직무 및 권한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기대효과

- 시민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공정.객관적인 조사와 해소기반 마련으로 시민권익구제 편의 도모
- 불명확한 법령.지침과 현실 간의 괴리 등으로 발생한 행정청과 시민간의 갈등 완화 도모
-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 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과의 신뢰 구축
- 법규만능주의, 소극적 행정처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심리적.경제적 비용 최소화

위원의 객관성 및 독립성 강화를 통한 실질적 청렴옴부즈만 제도 운영

□ 추진 배경

-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전문분야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객관성 및 독립성이 부족하여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에 맞는 감찰기능의 실효성 부족
 - 옴부즈만 위원 구성 시 관련 분야 전문성 고려로, 옴부즈만 위원이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각종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관련 자문 등을 실시하는 전문가(외부교수 등) 위주로 구성되어 불가피하게 자문과 옴부즈만 기능을 병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옴부즈만의 기능이나 활동실적이 주로 관련 분야의 제도 개선 권고에 한정
- 옴부즈만 운영실적 등을 해당 부서 위주로 공유하여 옴부즈만의 감찰 활동에 대한 기관 전체 및 관련 유관기관(지자체, 공사·용역 등 관련 업체)의 인식이 부족함.

□ 적용방안

- 옴부즈만 본래의 외부 감찰기능에 맞게 공무원의 권력남용 등을 조사·감시하는 행정통제 제도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구성·운영
 - 옴부즈만 구성 시 관련 전문분야 외에 행정, 회계, 법·제도 관련 전문가 참여 확대
 - 위원 후보자 선정 시 기관과 연관성이 적은 감찰 분야 외부 전문가의 추천 등을 통해 위원 후보 다양화 추진

- 관련 전문가 중 소속 및 성격 등이 행정적인 제도권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관련 NGO단체 등의 참여 확대**
- ombudsman 참여자 공모 등을 통해 ombudsman 제도 홍보 및 행정
서비스 상대자인 **일반 국민의 참여 유도**
- 행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ombudsman 활동 공개 및 기관 계간지 게재 등 홍보 강화

□ 기대효과

- ombudsman 운영 취지에 맞는 감찰기능의 객관성, 실효성 확보
- ombudsman 인적 구성 다양화를 통해 ombudsman 감찰 기능 및
전문성 강화
- ombudsman 홍보 강화를 통하여 기관 내·외 부패행위 감소 효과
및 기관 청렴이미지 제고

선진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통한 대내외적 옴부즈만 역할에 대한 공감 확산

□ 추진배경

- 국제기구 주요 반부패정책 중 적용가능한 부분에 대한 도입을 통해 기관의 청렴도 등을 제고하고자 함
- 국제옴부즈만협회(IOI) 및 오스트리아옴부즈만협회(AOA)의 사례를 참고

□ 적용방안

- 옴부즈만 및 운영부서의 독립성 제고 노력
 - IOI 현장 방문 결과, 확실한 독립성이 보장된 체제하에서 자율적이고 책임감있게 민원 및 부패사건 등을 해결하고 있었음
 - ☞ 현재 운영 중인 3인의 옴부즈만 체제가 원활하게 시행되고는 있으나 민감한 건에 대해서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 및 운영부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규정 고도화 필요
- 국제옴부즈만협회 가입 검토 및 국내 타기관 옴부즈만과의 협업 검토
 - AOA 및 IOI 등 국제옴부즈만협회에 개별 기관으로서 가입하는 부분을 검토하여 비용대비 실익이 있는 경우 적극 추진
 - 국내 타기관의 우수 옴부즈만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협업하는 방안 추진
- 적극적인 홍보 노력 벤치마킹
 - 전국민의 관심제고를 위해 옴부즈만 현안사건에 대한 토론내용을 TV프로그램으로 정규화하여 방영중에 있었음(주1회, 프라임 타임 확보)

- 개별기관 입장에서 TV프로그램을 통한 홍보는 어려우나, 적극적인 홍보노력을 거울삼아 **현존하는 홍보수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ombudsman의 해결노력을 홍보할 필요
- 관련한 내용을 주로 하는 홈페이지 등을 구성하여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



IOI 홈페이지



옴부즈만컨퍼런스

□ 기대효과

- 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며 제언하는 옴부즈만의 독립성이 제고되고, 대내외적으로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기관 청렴도가 제고되고 부패방지시책 평가도 향상되리라고 판단

□ 추진 배경

- 시험성적서 위·변조에 따른 국민적 불신 해소 및 시험성적서 검증체계 강화로 공공부문 조달분야 반부패 노력 강화
-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자재 신뢰성 있는 품질확보를 위해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영 필요
 - 공인시험기관(6개 기관)과 협업을 통한 시험성적서 원본을 시스템에 등록
- 자재 계약사 및 협력회사에 대한 품질관리 정보 제공 필요
- 품질검사 프로세스 개선 및 기자재 계약사 품질담당자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필요

□ 추진 내용

- (검증시스템 구축) 시험성적서 발급기관 협업체계 완료
 - 실시간으로 성적서를 등록하여 언제, 어디서 성적서 검증 가능
 - 각종 시험성적서 발급기관과 협업
- (정보 제공) 기자재 계약사의 품질관리 정보 공유
 - 성적서 위·변조 현황 및 계약사 품질관리 정보를 제공
- (자료 제공) 표준화된 시험 및 검사절차서 제공
 - 기자재 시험관련 절차서 제공
- (위·변조 현황 공유) 관련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성적서 위·변조 관리 강화
 - 성적서 위·변조 현황을 전파·공유하여 사전에 차단

□ 기대 효과

- (위·변조 방지) 성적서 위·변조 발생 Zero
 - 품질입회검사 전 해당 기자재 성적서 확인 및 기자재 공장에서 QR코드를 이용하여 한번 더 검증
- (고품질 확보) 시험성적서 검증시스템 운영으로 기자재 신뢰성 확보
 - 고품질의 건설 기자재 제작 및 설치로 설비 안정적 운전
- (반부패의식 제고) 성적서에 대한 확인 및 검증 마인드 제고
 - 성적서 확인 및 검증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검증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으로 공공부문 조달분야 반부패 노력 선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홍식

해외여행이거나 해외연수, 또는 해외출장이 쳇바퀴 도는 듯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다면 이를 마다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다. 나 또한 여느 샐러리맨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이번 기회가 설렘으로 기다려졌다. 감사실 발령이후 맡게 된 청렴도와 부패방지시책평가 업무를 하면서 받았던 부담과 노력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게 되었다는 느낌도 좋았지만, 각 기관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또한 소중한 일이 될테니까. 그것도 평생 가보기 쉽지 않은 오스트리아에서 말이다.

교육훈련을 잘 진행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사전 모임이 마련되긴 했지만, 처음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약간 어색하고 서먹한 느낌은 금방 사라지지 않았고 오스트리아 현지에 도착해서야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11시간의 긴 비행을 마친 다음날부터 바로 이어진 교육은 여느 일반적인 여행과는 확연한 차이를 느끼게 해 주었다. 게다가 영어로 교육을 받으려니 멍한 머리가 더욱 굳어버리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냅 놓고 있다가는 기관을 대표해 오스트리아까지 날라 온 이유가 사라질 듯 싶어 신경을 곤두세워 아는 단어에 최대한 집중하려 애써 보았지만, 혼자 힘으로는 턱없이 부족함을 절감했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자신을 탓해야 때늦은 후회일 뿐. 이때부터 권익위 국제교류담당관 사무관님의 진가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업무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거침없이 유창한 영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시는 모습을 보니 나 또한 뿌듯해지는 느낌마저 들었다. 덕분에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국제옴부즈만협회(IOI), UN마약범죄국(UNODC), 오스트리아 경제범죄 및 부패 전담 검찰청(WKStA)에서의 교육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IACA에서는 3일간의 교육이 진행 되었는데, 질문도 많고 발표도 활발해 참가자들의 업무열의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제로 한 첫 번째 강의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산업 자체의 근원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는 불안정한 사회를 조성함으로써 중국에는 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부패를 척결하는 데 있어 국제적인 협력과 노력, 그리고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이는 곧 오스트리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 2011년 설립된 IACA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나이지리아의 반부패 노력 성공사례인 여권발급시스템 개선효과,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ICPC(나이지리아 반부패 총괄기구)에 대한 소개도 특별했다. 각 국가나 기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노력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유익했고, 조직내에서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상호관계형성의 중요함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어 신선했다.

국제옴부즈만협회(IOI)는 옴부즈만 개념의 확산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78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데 사무국이 2009년 캐나다에서 지금의 오스트리아로 이전하였다. 오스트리아 수석 옴부즈만이

사무총장에 취임하여 활동 중이며, 3명의 위원이 전문분야를 나누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런 활동을 TV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청률까지 매우 높다고 하니 그 프로그램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오스트리아 경제범죄 및 부패 전담 검찰청(WKStA)에서는 내부고발제도와 그 시스템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5백만 유로 이상의 피해액에 대한 경제범죄와 금융범죄를 관할하고 있는데, 무기명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이다. 작년 봄부터 무기명의 자체신고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고 그 실적이나 효과는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보완 과정을 통해 점차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의 기명 신고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 시스템의 활성화 여부는 주목해 볼 만할 하다.

비 오는 날의 UN방문도 기억에 남는다. 공항처럼 벨트까지 풀어야 하는 철저한 소지품 검사를 시작으로 엄청난 구조의 UN건물들이 비엔나의 일반적인 전통 건물과는 차이가 커서 인상적이었다. 그걸 모두 오스트리아 정부가 지원해서 지은 건물이라니 ‘왜 그렇게까지 했을지’ 의문스러웠지만, 궁금증은 곧 풀렸다. 오스트리아는 중립국이므로 각종 국제기구를 자국 내에 유치함으로써 생기는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중립국으로서의 위상확보와 각종 회의, 세미나 등을 통한 관광자원개발이 그것이다. UN도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뇌물의 공여와 수뢰에 대한 강의를 이어 UN 기구 전반에 대한 안내가 이어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기관으로나 개인으로나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반부패를 위한 노력은 개인이나 일개 기관, 또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간 공조 노력이 왜 필요한지를 여러 기관 방문과 교육을 통해 느끼게 되었고, 내가 맡고 있는 이 업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새삼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 게다가 같은 업무를 하는 타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얻게 된 소득은 그 무엇과도 바꾸기 어려울 것 같다. 담당자들의 애환부터 앞으로의 업무방향까지 함께 모색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물과 공기가 맑고 깨끗할뿐더러 그 속에서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사는 오스트리아의 여러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후손들에게도 더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물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된다.

붙임 : IACA 반부패 교육훈련 수료증(별첨)